

제287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정관 변경 보고

2019. 6. 20



서울연구원 정관 변경 보고

1. 변경사유

- 「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」 개정에 따른 “자치구 행정 및 구의회 의정 연구”에 대한 근거 마련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비
 - 용어정비 : (기존) 근로자 ⇨ (변경) 노동자
- 연구원을 관리·감독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피감기관인 연구원의 감사직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당연직 감사 대상을 변경하고자 함.
 - 당연직 감사 : (기존) 서울시 감사위원회 위원장 ⇨ (변경) 서울시 조직담당관
 - ※ 대부분의 타 지방연구원 및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서는 당연직 감사를 시도 주무부서 과장으로 운영

2. 주요내용

- ‘자치구 행정 및 구의회 의정 연구’에 대한 근거 마련 (안 제4조)
 - ‘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’
- ‘근로자’라는 용어를 ‘노동자’로 수정 (안 제13조, 안 제14조, 안 제15조)

근로자이사제, 근로자이사



노동자이사제, 노동자이사

- ‘당연직 감사’ 변경 (안 제17조)

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



당연직 감사는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으로 한다.

3. 부 칙

- 시행일 : 이 정관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정관 신구조문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목적) 연구원은 거대도시화에 따른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된 제부문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조사·연구하여 서울특별시 정책개발과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사업)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 1 ~ 6 (기재 생략) 7.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신 설></p> <p>제1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, <u>근로자이사</u> 포함) 감사 2인 원장 1인 <u>근로자이사</u> 1인 ②~③ (기재 생략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~ ② 생략 ③ <u>근로자이사</u>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 임명하는 자가 된다. ④ (기재 생략)</p> <p>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④ 생략 ⑤ <u>근로자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근로자</u>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근로자</u> 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<u>근로자이사</u>의 임기와 관계없이 <u>근로자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제17조(감사) ①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1인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. ② (기재 생략)</p>	<p>제2조(목적) (현행 동일)</p> <p>제4조(사업) 연구원은 제2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 1 ~ 6 (기재 생략) 7. <u>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요청에 따른 자치구 행정과 자치구의회 의정에 관한 연구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</u> 8. 기타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</p> <p>제1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 이사장 1인 이사 15인 이내(이사장 및 원장, <u>노동자이사</u> 포함) 감사 2인 원장 1인 <u>노동자이사</u> 1인 ②~③ (기재 생략)</p> <p>제14조(이사의 선임) ① ~ ② 생략 ③ <u>노동자이사</u>는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선출하고 서울특별시장 임명하는 자가 된다. ④ (기재 생략)</p> <p>제15조(임원의 임기) ① ~ ④ 생략 ⑤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<u>노동자</u> 투표 등 선출절차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<u>노동자</u> 이사의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와 관계없이 <u>노동자이사</u>의 임기도 당연히 종료된다.</p> <p>제17조(감사) ① 감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되 1인은 서울특별시 조직담당관으로 한다. ② (기재 생략)</p>